2022년 교통유발부담금
부과 대상 시설물 현장(전수)조사 안내

1.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의거 매년 10월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와 관련하여 2022년도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용도, 소유자 등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

○ 교통유발부담금

가. 부 과 대 상 :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1,000㎡ 이상인 시설물

※ 연면적이 1,000㎡ 이상, 집합건물의 경우 본인 소유 면적 160㎡ 이상부터 부과 대상

나. 부 과 기 간 : 2021. 8. 1. ~ 2022. 7. 31.

다. 납 부 자 : 2022. 7. 31. 기준 현재 소유자(부과기간 내 최종 소유자)

라. 부담금 산정방법 : 각층 바닥면적의 합(㎡) × 단위부담금(원) × 교통유발계수

마. 납 부 기 간 : 2022. 10. 16. ~ 10. 31.

○ 감면 신청 서류

① 일할계산신청서 :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기간 중 소유권이 변경되어 교통유발부담금 일할계산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

② 미사용신청서

- 부과대상 기간 중 미임대(폐업)로 공실기간만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
-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임을 소유자가 증명하여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

2. 시설물 조사 : 2022. 5. 2. ~ 2022. 7. 31.(3개월)

○ 시설물의 소유자 현황(변동사항) 및 시설물의 **각 층 호수별 실제 사용용도 등을 확인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정확히 부과**

○ 조사내용

· **각층, 호수별 실제사용 용도** 및 상호(상호가 있는 경우)

· 소유주 현황(변동사항), 전화번호, 우편물 수령지

· 공실된 부분이 있는 경우 기간과 면적 등

3.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금천구청 교통행정과(담당: 정명하 주무관, ☎2627-2484)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